계 약 서

에어프로덕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 아토 대표이사 이문용(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구미공장 설치될 Ar Purifier(이하 "제품"이라 칭 한다)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품명세 및 수량

제 품 사 양	수 량	단 가	금 액(원)
Ar Purifier - AGT-RA-150	1		192,000,000
* 상세 구성품 및 사양은 첨 부 견적서 참조			
합 계			192,000,000

제 2 조 제품사양

제품의 사양은 "을"의 제출된 견적서 및 "갑"이 제공한 설계 도면 및 별도의 견적설명서에 명시된 부분 및 그에 부수하는 사양에 따른다.

제 3 조 제품인도조건

"을"의 제작 완료후 "갑'의 지정장소 설치,시운전 조건으로 한다. 단, 운반 과정 중에 발생되는 제반 사고 및 손실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납 기

2011년 1월 7일 까지 납품 완료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일금 일억구천이백만원정(#192,000,000 - VAT별도, 45일 현금)

제 6 조 지불방법

제작완료후,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45일후 현금지급.

제 7 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선급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을"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하자이행보증금납부 시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제 8 조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을"은 "갑"이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전액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을"의 선급금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갑"은 "을"이 본 계약 수행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체상금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제 4조의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지체 상금의 총액은 계약 금액의 30/100을 한도 금액으로한다. "을"이 지체 상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단, 제 17조의 불가항력적사유로 기인 한 것이거나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본 지체 상금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

"을"은 설치 및 시공 완료 후 12개월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을"의 비용으로 보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을"의 하자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하자 보증금으로 잔금 수령 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갑"의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하자 보증금으로 임의로 보수하고 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용재료

계약 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제작 도면 및 시방서에 정하여 승인 받은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표준 품 또는 표준 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 하고 최고품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2 조 품질관리

- 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갑"의 대리인 혹은 검사원은 언제든지 "을"의 제작 과정 참관과 중간 검사, 최종 검사를 할 수 있다.
- 2. "을"은 반드시 "갑" 직원 입회하에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
- 3. "을"은 검사가 1회에 합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납기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4. "을"은 시험 검사 항목 및 시험 검사 일정을 "갑"에게 제출 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갑"의 입회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갑"의 입회 검사 및 승인 후에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 5. "을"은 반드시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갑"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갑"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도 "을"은 즉시자료를 제출한다.
- 6. "을"은 계약 제품의 납품 시 자체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고, 제품 출하 전에 "갑"에게 출하 검수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검수인을 "을"의 출하 검수 장소에 파견,출하 검수 입회를 하고 완료 후 "을"의 출하 검수서를 확인, 날인한다.

제 13 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시의 손해배상

1. "갑"은 다음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물품 내역이 계약서와 상이 할 때 나.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리라고 "갑"이 인정할 때

다.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

- 2. "갑"은 "갑"의 사정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5일 이전에 "을"에게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은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을"의 제비용을 "을"에게 실비 정산한다.
- 3. "갑"은 "을"이 계약을 불이행 하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 수행 능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일 이전에 "을"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계약 업무를 중지하고, 기타 사항들은 "갑"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4.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고의적으로 본 업무를 중단하여 "갑"이 업무 진행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에 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조 1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2배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갑"은 제 5조에 따라받은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의 양도

- 1. "갑", "을"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혹은 그 행사를 위임하지 못한다.
- 2. "을"은 계약 목적물 또는 검사를 마친 재료를 제 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 부터 입수 또는 인지한 사항을 업무수행 중,완료 후에라도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 2. "갑"이 "을"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제공한 도면 및 기술자료는 "갑'의 소유이며 "을"은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으며,업무 종결 시자료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을"이 계약중 입수 또는 인지한 비밀을 누설 시에는 "을"은 "갑"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지체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16 조 안전관리의무

"을"은 "갑"의 본 계약상의 모든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갑"의 종업원이 "을"의 공장에 항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제품의 현장 제작 과정 또는 성능 검사 중("갑"의 현장 설치 후 성능시험 포함)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이고 "을"의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타 지역에서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을" 뿐만 아니라 "갑" 및 "갑"의 종업원과 "갑", "을"이외의 제3자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도 민, 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갑"이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17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실상 이행할 수가 없을 경우 불가항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지연, 손상은 본 계약 수행상의 파기나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해 각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을"의 원자재 수급에 관한 문제 혹은 노사분규는 불가항력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8 조 특 허

"을"은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의 특허권이나 권리를 사용하거나 침해할 때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특허권이나 권리침해로 인하여 "갑"에게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갑"을 보호 하여야 하며 "갑"에게 부과된 청구, 비용 등에 대해서도 "을"이 이를 부담한다.

제 19 조 세 금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에 따라 "을"에게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을 부담한다

제 20 조 업무연락 및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청구, 요청 및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화로 통지 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그 근거를 문서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확인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일반사항

본 계약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와 더불어 양 당사자간의 전체적인 협약 사항을 총괄한 것이며, 본 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협의 사항, 명시 사항 및 합의 사항에 우선한다.

제 22 조 중 재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상호 우호적인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고 상호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 상사 중재원에 의하여 해결 하도록 하며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하고 분쟁 중재 중에도 본 계약 업무는 "갑"의 의견에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 본 계약은 "갑", "을"양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2010 년 12월 1일

"갑" 에 어 프 로 덕 츠 코 리 아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8-3 대 표 이 사 이 수 다연

"을" ㈜ 아 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다 302 대 표 이 사 이 문 용